

表彰狀의 圖案을 변경 활용하고자 條例를 改正하려는 것입니다.

改正內容은 條例에 規定된 表彰狀 書式을 市長이 필요에 따라 時宜適切하게 표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査委員會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禔柱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提案說明된 案件에 대하여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俞炳敦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査委員會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를 올리겠습니다.

(報告)

1. 委員會 回附

가. 提案者 및 提案日字 : 서울特別市長('94.2.21)

나. 回附日字 : '94.2.22.

다. 上程日字 : 第69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94.3.24)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提案理由

地方公務員法 改正(法律 第4613號, 1993.12.27)에 따라 서울特別市人事委員會委員에 對한 實費補償根據 마련을 爲하여 現行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査委員會費用辨償條例를 改正하여 人事委員會와 訴請審査委員會를 統合한 費用辨償에 關한 事項을 定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人事委員會 및 訴請審査委員會의 委員에게 實費辨償토록 함(案 第1條)

다. 參考事項

○ 關係法令 : 地方公務員法 第7條 및 第14條

○ 豫算措置 : 追更豫算 編成時 要求

○ 合 意 : 合意 必要없음

○ 其他事項 : 改正條例案 別添

3. 檢討意見

가. 人事委員

○ 地方公務員法(以下 法이라 함) 第6條는 自治團體의 長은 任用權(任命, 免職, 休職, 懲戒를 行하는 權限)을 갖도록 規定하고 任用權者別로 5人 以上 7人 以下로 構成되는 人事委員會를 設置(法 7條)하여,

1. 任用 및 昇進試驗의 實施

2. 昇進, 轉補任用基準의 事前審議

3. 昇進任用的 事前審議

4. 任用權者의 要求에 依한 公務員의 懲戒議決

5. 其他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그 管掌에 屬하는 事項 等の 事務를 管掌토록 規定(法 8條)하고,

○ 同法 第7條 第4項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委員에게 實費補償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法律 第4613號(93.12.27) 地方公務員法 改正法律이 施行되기 前에는 人事委員은 人事行政에 關하여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公務員中에서 任命 또는 委囑한 關係로(法 7條 3項) 人事委員에 對하여 法 第7條 第4項에서 實費補償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別途의 實費補償條例가 없었음.

○ 그러나, 法律 第4613號 地方公務員法 改正法律의 施行에 따라 人事委員으로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뿐만 아니라,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2. 大學에서 法律學·行政學 또는 教育學을 擔當하는 副教授 以上の 職에 있거나,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校長의 職에 있는 者

3. 公務員(國家公務員을 包含한다)으로서 20年이상 勤續하고 退職한 者를 人事委員으로 委囑할 수 있도록 改正되어, 外部人士가 人事委員會에 參與

하게 되어 實費補償條例의 必要性이 擡頭됨.

나. 訴請審査委員

- 法 第13條는 公務員의 懲戒 其他 그 意思에 反하는 不利益處分에 對한 訴請을 審査決定하기 爲하여 任用權者別로 地方公務員 訴請審査委員會를 두도록 되어 있고,
- 法 第14條 第1項에 審査委員會는 委員 7人으로 構成하며, 同條 第2項에 委員은,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있는 者
 2. 大學에서 法律學을 擔當하는 副教授 以上の 職에 있는 者
 3. 所屬局長級 以上の 公務員 中에서 市長이 任命 또는 委囑토록 되어 있으며,
- 委員에게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實費補償을 할 수 있도록 되어, 1966. 6. 8 條例 第442號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査委員會費用辨償條例가 制定되어 施行中에 있었음.

다. 改正條例(案)

- 改正條例案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人事委員會에 對하여는 法 第7條 第4項에서, 訴請審査委員會에 對하여는 法 第14條 第3項에서 實費補償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이를 單一의 條例로 統合하고자 먼저 條例의 名稱부터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査委員會費用辨償條例」에서 「서울特別市人事委員會및訴請審査委員會費用辨償條例」로 하고, 人事委員과 訴請審査委員의 實費辨償等 規定하고자 改正提案된 것임.

- 法 第7條 第4項과 法 第14條 第3項은 實費補償을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으나, 改正條例(案) 第1條는 “實費辨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하여 法上 用語와 差異가 있으나, 一般的으로 補償은 損害의 填補時 財產上의 損失을 補充하기 爲하여 交付되는 金額의 意味로, 辨償은 財產上 金錢上의 損失을 풀어주는 意味로 會計關係에 使用되나 條例 運用上에는 別差가 없는 것으로 思料되고,

- 法上 實費를 補償토록 되어 있으나 改正條例(案) 第2條는 日費로 規定하였는 바, 생각컨대 日費는 日當의 뜻으로 實費는 實際所要費用의 뜻으로 생각되나, 各 委員마다 委員會參席實費를 計算하기도 어렵고 힘들어 日費로 規定한 것이 理解가 되며,
- 또한 日費의 基準이 없이 “豫算의 範圍內에서 日費를 支給한다”로 되어 있어 漠然한 點이 없지 않으나, 大部分의 委員會(자랑스런市民賞 功績審査委, 公職者倫理委員會)가 類似한 規定을 두고 있는 點과 現實面에서 諸般物價水準 反映과 彈性性 있게 條例를 運用하기 爲하여 不可避한 것으로 思料됨.
- 參考로 訴請審査委員의 豫算上 日費는 '93年度에 1回 3萬원에서 '94年度에는 5萬원으로 計上되었음.
- 委員이 公務旅行時 第3條의 旅費基準을 보면은 2級公務員에 相當하는 旅費를 支給토록 規定하였는 바, 委員의 身分이 法官, 檢事, 辯護士, 大學校 副教授職에 있는 者 等임을 勸案할 때 妥當하다고 思料됨.

다음으로 서울特別市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

1. 委員會 回附
 - 가. 提案者 및 提案日字: 서울特別市長(94.3.11)
 - 나. 回附日字: 94.3.12
 - 다. 上程日字: 第69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94.3.24)